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가. 제안이유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과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2) 교통민원신고 심의시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임기 제한과 교통민원신고 심의 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시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그 동안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254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심의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 개정 (안 제5조제1항)

(현 행) 임기 1년, 연임 가능

(개 정) 임기 2년, 1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

나.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신설 (안 제7조제4항)

다.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서울시 감사담당관-8839(2013.06.19)호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권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0.4~10.24,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로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버스운수사업체(조합), 택시운송사업체(조합, 지부)의 임·직원

제3조제2항제2호 중 “일반시민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6명”을 “일반시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의”를 “청렴성 훼손 및 그 밖의”으로, “해촉하여야”를 “위촉 해제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사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기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차 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 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 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같음 한다.</p> <p>1. 2. (생략)</p> <p>3.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 반 사항</p> <p>② (생략)</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을 포함하여 <u>10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u>버스운수사업체(조합), 택시운송사 업체(조합, 지부)의 임·직원 중 서</u></p> | <p>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u>----- ----- 운영에 ----- -----.</p> <p>제2조(기능) ①<u>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u>모 든</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 <u>10명 이내</u>----- -----.</p> <p>②-----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p> <p>1. <u>버스운수사업체(조합), 택시운송사 업체(조합, 지부)의 임·직원</u></p> |

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 각1명

2.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6명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확인(가결) 또는 확인불가(부결)로 분류 처리한다.

②, ③ (생략)

<신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략)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2. -----

----- 일반시민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

②-----청렴성 훼손 및 그 밖의-----
----- 위촉 해제하여야 -----.

제7조(회의운영) ①----- 각 호-----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①-----
-----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모든사항-----
-----.

제12조(수당 등) -----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그 밖에 -----
-----.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
-----.